

현행	개정안
<p>제10조(준용)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p> <p>(신설)</p>	<p>제10조(준용)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p> <p>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95. 2. 28.
시민보전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4. 11. 23.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4. 11. 23.
- 다. 상정일자 : 제26회 정기회 제9차위원회('94.12.23.) 상정, 심사
제27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95.2.2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유승권 청소과장)

가. 제안이유

본격적인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을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개

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10조)
-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의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건재)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과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등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의 난방시설·환풍시설과 조명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개선명령 이행기간내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

정하는 것임.

- 동 조례안의 제정은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편익증진 및 국제화에 대비한 선진화장실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취지인 바,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인력 배치에 적정성 여부와 비위생적인 청소환경의 개선 등 문제점도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356
----------	-----

제출년월일 : 1994.11.23.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본격적인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을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개인 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10조)
 -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4.3.16.법률제4741호)제10조 제2항 및 제20조제1항
 - 지방자치법시행령(1994.7.6.대통령령제14317호)제8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3.12.27.법률제4656호)제16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2.9.28.총리령제409호)제24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이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
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종합여객시설

10.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1.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12.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13. 관광진흥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전문휴양·종합휴양시설
14.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5.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16. 기타 구청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 2 장 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5개이상 또는 5인용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센티미터이상, 세로 115센티미터이상(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센티미터이상)일 것
3. 수세식일 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월기(또는 물러타월기),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공중화장실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할 것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남자·여자 표지를 부착할 것

제6조(기타시설)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시설의 유지·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법 제52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유지·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1일 3회이상 청소할 것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10월까지는 주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년1회이상 도색할 것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장비상황과 유지·관리상황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

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4 장 시설개선명령

제13조(시설점검)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2회(상·하반기)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명령) 구청장은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청결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는 설치·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서를 이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유료화장실 승인

제16조(유료화장실 승인)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전담관리인을 둘 것
3. 화장지, 비누, 수건(또는 에어타월기)등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시설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구청장이 정한 고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을 것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 6 장 과태료 부과 징수등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은 별표 제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청문) 구청장은 제1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처분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등) ① 제18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4항을 준용하여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5항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을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1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 차	2 차	3 차
1.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 가. 제5조, 제1, 2, 3, 4호 위반 나. 제5조, 제5, 6, 7호 위반	제5조	20	40	60
2. 관리인 미지정 및 청결관리에 소홀한 때	제8조	10	20	30
3.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지 아니한 때	제9조	10	20	30
4.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제10조	20	30	50
5.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17조 (제3호 내지 제4호)	20	30	50

(별지 제1호 서식앞면)

공 증 화 장 실 관 리 카 드

관 리 번 호	□ □ - □ □ □ □		소 재 지								
지역구분			설 치		책 임	소 속					
관리주체			년 도		공 무 원	직 위 · 직 명					
관 리 인			(전화)			성 명					
규 모	대 지 (㎡)	전 평 (㎡)	대 변 기		소 변 기		변 소 의 형 태		사 용 료		
			남	여	대 인	소 인	수 세 식	수 거 식	무 료	유 료	
			개	개	개	개					
편 의 시 설 용 품	세 면 기	에 어 타 율 기	환 풍 기	화 장 지 (자 동 판 매 기)		비 누 (액 체 비 누)		수 건		약 품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개	대	대								
시 설 관 리 상 황	년 월 일	관 리 사 항	금 액 (천 원)	년 월 일	관 리 사 항	금 액 (천 원)	년 월 일	관 리 사 항	금 액 (천 원)		

(별지 제1호 서식뒷면)

약 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번호 : 시군구 단위 읍면동별 일련번호 부여 ○ 지역구분 : ①터미널 ②시장 ③역 ④공원 ⑤유원지 ⑥문화재 ⑦도로변휴게소 ⑧시가지 ⑨주유소 ⑩항·포구 ⑪선착장 ⑫운동장 ⑬기타 ○ 관리주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공단, ○○조합, ○○번영회, 개인등) 										

(별지 제4호 서식)

유료 화장실 승인 신청서

처리기한

5 일

신 청 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시 설 현 황	주 소	(전화번호:)							
	소재지		관리주제						
시 설 현 황	전담관리인	(전화번호:)		설치년도					
	다른법령에 의한 화장실 설치의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시 설 내 역	면적 규모	㎡		이용인원 (일평균)		명			
	대변기	남	여	소변기	개				
		개	개						
편의시설 · 용품	세면기	에어타월기	환풍기	화장지		비누		약품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서울특별시마포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귀하

수수료없음

<첨부 서류>

1. 유료화장실 운영계획서(운영시간·사용요금등 명시)1부
2. 화장실의 설치장소 및 내부구조도 1부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승인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승 인 서

대 표 자	상호(명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담 관리인		(전화번호:)			
설 치 장 소					
시 설 내 역	대 변 기		소 변 기		
	남	여	개		
	개	개			
	세 면 기		에어타월기		환 풍 기
	개		대		대
1회 사용료		원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12 마포	
계 호	년도 일반회계		
납의 무	성명		
	주소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목) 과태료(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 실설치및관리조례위반)		
위반사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 제 조 제 항		
과 태 료 금 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기한	시중 금융기관(은행, 농협, 수 협)우체국 변창구(한은, 산은 제외)		
위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마포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 조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수 납 일부인		
년 월 일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인)			

(수납은행 보관용)

과태료 영수필통지서		12 마포	
계 호	년도 일반회계		
납의 무	성명		
	주소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목) 과태료(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 실설치및관리조례위반)		
위반사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 제 조 제 항		
과 태 료 금 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 납 일부인	
년 월 일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귀 하			

(구청 보관용)

과태료 영수필		12 마포	
계 호	년도 일반회계		
납의 무	성명		
	주소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목) 과태료(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 실설치및관리조례위반)		
위반사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 제 조 제 항		
과 태 료 금 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 납 일부인			취 급 자 인
년 월 일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인)			

은행 지점(인)

(별지 제8호 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 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 금액		⑦ 당초납부기한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금융기관(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인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① 고지금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④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인

(별지 제10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납부 의무자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준		⑥ 납부통지서번호	
	⑤ 고지받은일자		⑦ 과 태 료 금 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 에 대한 불복 사유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수 신 발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 금액	
	⑤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